㉾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1동 302-75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장 김기성(6574)/ 보험급여팀장 김선우(6576)/ 대리 고영옥(6573)/ E-mail: 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685호

시행일자 2016. 8. 8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7호(2016. 8. 4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8호(2016. 8. 4)

2.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5호, 2016. 7. 29.)」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7호, 2016. 7. 22.)을 개정·발령(시행일: 2016. 9. 1자)한 바,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주요 개정내용]

○ 전액본인부담 항목(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등 31항목)의 일괄 선별급여 적용(본인부담 80%)

[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 주요 개정내용]

(대의협 제813-685호) 시행일자 2016. 8. 8

○ 급여 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 절차 등 일부개정

붙임: 고시개정문 2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